

산재보상보험과 구강보건

1. 산재 보상보험에서 구강보건의 중요성

지난 30년동안 산재보상보험에 있어서 구강보건영역은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해 왔다. 현 산업재해 치과환자를 위한 요양비산정기준은 60년대 치과진료술식에 70년대 수가체계에 고정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는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 그동안 치과의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치료술식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진료수준이 전혀 다르게 변화,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치료술식의 인정이나 수가의 개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금의 산업재해 치과환자의 치과진료는 거의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질의 진료는 기대할 수 없을 뿐아니라 과행적인 진료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료과정에서 때로는 산업재해 자체에서 입은 치과피해이상의 피해를 당하게되는 결과로 나타나 환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줄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재정도 보호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장애보상(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13조)

신체의 장애는 모두 14개 등급, 131종으로 분류되어 장애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구강보건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의 장애등급 기준표

구 분	등 급	장 해 의 정 도
언어의 기능및 음식을 씹는 기능장애 치아의 장애	제 1급의 2	언어의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제 3급의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자.
	제 4급의 2	언어의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제 6급의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제 9급의 2	언어의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제 10급의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제 10급의 3	14내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제 12급의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제 14급의 3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2) 언어기능의 전폐 : 다음 4종의 소리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 ① 구순음 : 입술소리(ㅁ, ㅂ, ㅍ 등)
- ② 치설음 : 잇소리(ㄱ, ㅋ, ㆁ)와 혀소리(ㄴ, ㄷ, ㄸ, ㅌ 등)
- ③ 구개음 : 입천장 소리(ㄷ, ㅌ 등)
- ④ 후두음 : 숨이 후두를 통할 때 나는 소리(ㅇ, ㅎ 등)

3) 언어기능의 현저한 장애 : 4종의 소리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거나 설음기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만 사용하여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4) 언어기능의 장애 : 4종의 소리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 5) 음식을 씹는 기능의 전폐 : 유동식 이외는 먹을 수 없는 상태
- 6) 음식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 : 미음 또는 이와 비슷한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상태
- 7)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 :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으나 제한되어 있고 충분히 씹지 못하는 상태
- 8) 치과보철을 가한 자 :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보철을 가한 경우
- 9) 식도의 협착 :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장애(목구멍의 이상으로 음식을 삼키는 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을 씹는 기능장애 등급을 준용한다.
- 10) 미각 탈실(맛을 느끼지 못함) : 두부외상, 턱 주위조직의 손상,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탈실은 12등급을 준용한다.
- 11) 미각 장애는 필요한 모든 검사결과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 탈실로 취급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요양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등급을 결정한다.
- 12) 성대마비로 인한 현저한 목소리는 12등급을 준용한다.
- 13) 흉터장애

구 분	등 급	장애의 정도
의 모	남 자	제12급 13호 제14급 10호
	여 자	제7급 12호 제12급 14호

- 14) 외모 : 머리, 얼굴, 목과 같이 평소에 노출되는 부분
- 15) 현저한 흉터
 - ① 머리 : 손바닥(손가락 제외)한 크기 이상의 흉터, 두개골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손상
 - ② 얼굴 : 계란 크기 이상의 흉터, 5Cm 이상의 선상 흉터 또는 동전 10원 크기이상의 조직함몰
 - ③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 16) 단순한 흉터
 - ① 머리 : 계란 크기 이상의 흉터, 두개골의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 ② 얼굴 : 동전 10원 크기 이상 또는 3Cm 이상의 선상 흉터
 - ③ 목 : 계란 크기 이상의 흉터
- 17) 장애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외모의 흉터는 사람의 눈에 될 정도 이상의 것이어야만 하므로 흉터, 선상흉터, 조직함몰 등이 눈섭이나 머리 카락으로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흉터로 취급하지 않음.
- 18) 얼굴신경 마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입비 틀어짐은 단순한 흉터, 눈이 감아지지 않는 경우는 눈꺼풀의 장애로 취급함.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받게되는 장애급여와 노동력 상실의 정도를 표시한 신체장애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도

장 애	장 애 등 급	신 체 장애도 (%)	지급방법	연 금	일 시	비 고
				평균임금기준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제 1급	100	연 금	329일분		최초 4년분은 선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저작 또는 언어가 현저한 장애	제 3급	100	연 금	257일분		
저작권 언어가 현저한 장애	제 4급	92	재해자의 선택	224일분	1,012 일 분	연금인 경우 최초 2년분 선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저작 또는 언어기능의 현저한 장애	제 6급	67	재해자의 선택	165일분	737 일 분	
저작과 언어기능에 장애가 남았음	제 9급	35	일시금	365일분		
저작 또는 언어기능에 장애가 남았음	제 10급	27	일시금	297일분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제 7급	56	재해자의 선택	138일분	616 일 분	연금 : 최초 2년분 선급가능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제 12급	14	일시금		154 일 분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제 12급	14	일시금		154 일 분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제 14급	5	일시금		55 일 분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제 10급	27	일시금	297일분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제 12급	14	일시금		154 일 분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제 15급	5	일시금		155 일 분	

〈다음호에 계속〉